



소통하는 의정  
공감받는 의회

제37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 
(제1차 교육위원회)  
2019. 3. 8. (금) 10:00

# 전문위원 검토보고서

학교협동조합 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

교 육 위 원 회  
수석전문위원 이충환

학교협동조합 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: 충청북도교육감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○ 제출일자: 2019년 2월 26일

○ 회부일자: 2019년 2월 27일

3. 제안이유

○ 「충청북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에 따라  
‘학교협동조합 지원센터 운영’에 대해 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함.

4. 주요내용

- 위탁기관: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관련 학교협동조합 및 사회적 경제교육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전문성 있는 법인, 기관, 비영리 단체 기관 등
- 사업대상: 충북 도내 초·중·고등학교
- 위탁범위: 학생 및 교직원 대상 학교협동조합교육 지원 전반
- 위탁기간: 위·수탁 계약일로부터 10개월 (2019. 3월~2019. 12월)
- 위탁사업자선정방법: 경쟁 입찰을 통한 협상에 의한 계약
- 사 업 비: 20,000천원(자체예산 100%)
- 위탁주요사무
  - 충북교육청 학교협동조합 지원센터 운영
  - 학교협동조합 설립인가, 관리·감독 및 사후 지원
  - 학교협동조합 설립 One-Stop 서비스 지원

- 학교협동조합 네트워크 및 알리미 육성 교육 지원
- 학교협동조합 역량강화 및 확산을 위한 컨퍼런스 및 포럼 지원
- 학교협동조합 연계 사회적경제교육 활성화 프로그램 지원
- 학교협동조합 민관협의회 및 사회적경제 협력체계 구축 지원

## 5. 검토의견

-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도내 초·중·고등학교의 학교협동조합 설립 인가 및 관리·감독을 수행할 현장관리, 설립·운영 지원을 위해 2018년부터 실시해온 사업으로
- 학생 및 교직원 대상 학교협동조합 교육프로그램 운영, 매뉴얼 보급 및 운영 컨설팅, 재정지원 등 현장중심의 지원 체제 구축을 지원하고자 2019.6.부터 2019.12.까지 총 200,000천원의 사업비로 추진 예정임
- 학교협동조합 지원센터 민간위탁 사업은 학교협동조합 및 사회적 경제 교육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전문성 있는 법인, 기관, 비영리 단체를 선정하여 학교 내 협동조합 지원 방향 등에 대한 자문 수행을 위한 것으로, 충북교육지표인 ‘모두가 주인 되는 민주학교’ 달성에 이바지 할 것으로 사료됨

### ■ 학교협동조합

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를 기반으로 하여 공통의 경제적, 사회적, 문화적, 교육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고자, 학생, 교직원, 학부모, 지역주민 등 교육공동체 구성원이 민주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 학교 안에 자발적으로 결성한 「협동조합기본법」 상의 협동조합임